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상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0.

발 의 자 : 이상희 · 김상훈 · 신성범
구자근 · 김재섭 · 박덕흠
정동만 · 박성훈 · 김장겸
김성원 · 주호영 · 박성민
김대식 · 최은석 · 김 건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.

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

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.

제76조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1의2.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침해사고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.</u>
④ (생략) 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11. (생략) <u><신설></u>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1의2.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</u>
11의3. ~ 25. (생략) ④ (생략)	11의3. ~ 25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